

인천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3가단2130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6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2. 2. 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최유나

1)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1항에서 ‘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2. 2. 25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’고 기재하였으나, 청구취지 제2항을 고려할 때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’는 ‘별지 목록 부동산 중 2/7지분에 관하여’의 오기로 보이므로, 주문 제1항과 같이 기재하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기재한다.